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 215 제출연월일: 2013. 4. 8

제출자 : 이정율 의원 외 5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3년 4월 16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가 발의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 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: 없음

심 사 계 획

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(안)
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평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-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- 평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

3. 활동기간

○ 2013년 4월 16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○ 장문혁 의원, 유인환 의원, 함명섭 의원, 박종욱 의원, 이정율 의원, 정문섭 의원

5. 운영계획

일 시	차 수	내용	비고
		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	
		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	
		3. 평창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	
		4. 평창군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	
2013.	제1차	조례안	
4.16	조례특위	5.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운영ㆍ지원 조례안	
(화)	(13:00)	6.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	
		및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
		7. 평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· 운영	
		에 관한 조례안	
		8.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	